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-2조의4부터 제2-2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-2조의4(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) ① 영 제118조의16제 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회사의 개요
 - 2. 사업의 내용,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- 3. 설립 후 예상되는 회사의 기관, 대주주 및 발기인에 관한 사항
 - 4. 임원선임 계획
 - 5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영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다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 - 1. 영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: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가 동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(이하 이 조에서 "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"이라 한다)

- 2. 영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: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및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
- 3. 영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: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
- ③ 제1항제2호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에 관하여는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칙을 준용한다.
- ④ 영 제118조의16제1항제3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(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
- 2. 증권을 모집할 당시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이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한 사항
- 제2-2조의5(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등)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(이하 "게재사항"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영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게재사항 작성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,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할 것
- 2. 게재사항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, 표,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
- 3.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,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, 예측·추정·전망·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,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게재사항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
- 제2-2조의6(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) ① 영제118 조의17제2항제2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"이란 최

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② 영제118조의17제2항제3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"란 제2-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.

근 2년 이내에 1건에 1억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4천만원을 말한다.

제2-2조의7(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·절차) ① 영 제118조의18제3항제1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사항"이란 제2-2조의4제4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② 법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사실 확인(이하 이 조에서 "사실 확인"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 행하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한 다.
- 1.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
- 2.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
- 3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
- 4. 공시자료, 대법원·인터넷등기소·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 등 공개된 자료에 대한 검토
- 5. 언론보도 및 풍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
- 6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(제품구입처, 경쟁업체 등)로부터의 의견 청취
- 7. 게재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및 검토
- 8. 기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-2조의4(온라인소액증권발행
	<u>인의 게재사항 등) ① 영 제118</u>
	조의1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
	부분 단서에서 "금융위원회가
	정하여 고시하는 사항"이란 다
	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	<u>1. 회사의 개요</u>
	2. 사업의 내용, 그 밖의 사업계
	획에 관한 사항
	3. 설립 후 예상되는 회사의 기
	관, 대주주 및 발기인에 관한
	<u>사항</u>
	<u>4. 임원선임 계획</u>
	5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
	여 필요한 사항
<신 설>	② 영 제118조의16제1항제2호
	다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
	여 고시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
	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
	<u>다.</u>
	1. 영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
	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
	이 3억원 이하인 경우: 온라인
	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

<신 설>

<신 설>

기재한 서류가 동 온라인소액 증권발행인에게 적용되는 회 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 되었으며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온라인소 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(이하 이 조에서 "온라인 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"이라 한다)

- 2. 영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 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: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의 대표이사의 확인 및 공인 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
- 3. 영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
 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
 이 5억원 초과인 경우: 회계감
 사인의 감사의견
- ③ 제1항제2호에 의한 공인회계 사의 확인과 의견표시에 관하여 는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 한 규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칙을 준용한다.
- ④ 영 제118조의16제1항제3호 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

- 시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(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에관한 사항
- 2. 증권을 모집할 당시에 온라 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 주 및 임원이 해당 온라인소 액증권발행인의 업무와 관련 된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한 사항
- 제2-2조의5(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등)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(이하 "게재사항"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영제118조의16제4항에 따라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게재사항 작성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

- 게 작성하되, 알기 쉽고 충실 하게 작성할 것
- 2. 게재사항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, 표,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
- 3.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,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, 예측· 추정·전망·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, 추상적이거나 애맥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
-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게재사항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 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2-2조의6(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) ① 영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"이란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1억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4천만원을 말한다.

② 영제118조의17제2항제3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"란 제2-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2-2조의7(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 위 및 방법·절차) ① 영 제118 조의18제3항제1호에서 "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" 이란 제2-2조의4제4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.

② 법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수 행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에 관한 사실 확인(이하 이 조 에서 "사실 확인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 상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행하되

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한 다.

- 1.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
- 2.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면담
- 3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 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
- 4. 공시자료, 대법원·인터넷등 기소·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의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 등 공개된 자료에 대한 검토
- 5. 언론보도 및 풍문을 통해 수 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
- 6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 위하는 사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 (제품구입처, 경쟁업체 등)로 부터의 의견 청취
- 7. 게재사항과 관련된 자료의요구 및 검토
- 8. 기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

 요한 방법으로서 감독원장이

 정하는 방법